

#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'17년부터 대학의 인적·물적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활력을 도모하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며, 그간 청년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음.
- 나.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하여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중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과 투자실적이 있어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스타트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,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, 역량 있는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
- 다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
소재지	서울 광진구 자양동 2-3, 3층(더라움펜트하우스) 서울 광진구 자양동 2-2, 3층·8층(건대입구역자이엘라)
시설규모	연면적 3,498㎡
시설용도	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집중 육성(Scale Up)

## 나.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
- 위탁기간 : 3년(2023.3.1.~2026.2.28.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- 소요예산 : 2,500백만원('23년 예산안 기준)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 -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장의 책무) 및 제15조(대행·위탁)
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- 캠퍼스타운 청년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육성한 창업기업이 3 ~ 7년차에 경험하는 데스밸리(죽음의 구간)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VC 후속 투자연계, 국내외 판로개척,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함.
  - 또한, 캠퍼스타운 창업생태계가 창업밸리로 도약하는 데에는 캠퍼스타운 대학간 연계, 다양한 민간기업, 투자자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·협력이 중요하므로 창업기업 보육·지원에의 전문성과 민간 창업 주체들과의 네트워킹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

## 라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센터 입주기업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
  - 프리시리즈 A단계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선발·육성
  -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처방 지원
-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의 투자 유치 전략거점 구축
  - 투자자가 육성·투자까지 전과정 참여, 투자기관과 사업모델 검증
  - 데모데이, 전문가·VC 네트워킹 행사 등 정기적 투자 유치기회 제공
- 캠퍼스타운간 네트워킹 및 국내·외 민간 협력사업 활성화
-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인재 양성 및 투자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
마.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2022. 9. 2.) 심의 결과 : 적정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시장 등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대학은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대학의 경계를 넘어 도시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5조(대행 위탁)** 시장은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민간위탁금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캠퍼스타운활성화과 캠퍼스타운정책팀 박은숙(☎ 2133-4821)

이미현(☎ 2133-4836)